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찬열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57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2.

발의자 : 이찬열 · 전혜숙 · 김경진
황주홍 · 이동섭 · 이상현
김정호 · 김삼화 · 김철민
장정숙 · 유동수 · 박용진
전재수 · 정세균 · 정동영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은 생계급여 등의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되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그 결정의 요지, 급여의 종류·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, 수급자의 소득·재산·근로능력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액의 변경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 같은 통지의 내용에 급여가 어떠한 산출 근거에 기초해 결정되었는지, 급여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사항이 통지에 없어 수급자 자신이 정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.

이에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의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

함(안 제26조제3항, 제29조제2항).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요지”를 “요지(급여의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”를 “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